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925
----------	-------

제출연월일 : 2026. 10.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로 전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며,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준을 추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제고하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유연대용신탁 등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의 43.99% 부분의 세액은 올해 일몰하되, 주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의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1호 단서 및 제107조제2항제5호다목 신설)

- 1)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수익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주택 수로 가산하도록 함.
- 2) 수익자가 신탁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를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함.

나.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개선(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 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인과 같이 9개월 이내로 연장함.
- 2)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신고·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에 대해서도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적용 세율의 명확화(안 제34조제4항 및 제151조제4항 신설)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전에 적용되던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유지하되,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되,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그 밖의 시로, 통합특별시 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2) 주민세분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도 세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아 100분의 25로 하되,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100분의 10으로, 통합특별시의 군 지역은 100분의 10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라.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의 개편(안 제83조)

- 1)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징수 방식을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에서 해당 연도의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무신고(無申告)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2) 발급받은 납세고지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정할 사정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의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제고함.

마. 토지 타당성 평가 대상의 확대(안 제106조의2)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확대 또는 축소 등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바.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 강화(안 제111조제3항)

- 1) 현재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2)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사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마련(안 제118조의2제1항제3호, 안 제118조의2제6항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유예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8천만원 또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2)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허가의 최소로 인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부담을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한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대상 확대(안 제145조제2항 각 호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건축물과 선박 등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선(曳船) 등과 같이 다른 선박이나 해양에 대한 소방·방제 등 공공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자. 지방주거복지세의 신설(안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신설)

- 1) 종전에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던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의 도래에 따라 이를 종료하되,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새로운 목적세로 전환함.
- 2) 지방주거복지세는 지역의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운영, 효율적인 공급 및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주거복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3)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등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차.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안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가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7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가. 해당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각각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보류지 등 가목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장에서 “체비지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체비지등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4.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설립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⑰ 다음 각 호의 신탁에 따라 부동산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이하 이 장에서 “수익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다.
1.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2.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신탁에 준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탁등기가”를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록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을 “제7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소를 둔”을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로 한다.

제10조의5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6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을 각각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신탁된 주택은 수익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법인에게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소를 둔”을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록이 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의 등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그 밖의 시
2. 통합특별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다.

가.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시

나.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미만인 경우: 그 밖의 시

다. 읍·면 지역: 군

3. 통합특별시의 군 지역: 군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6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분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징수하려면 납세고

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 조 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2.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6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3.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4.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29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5.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5.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5,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6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6.2퍼센트)

10억원 초과	5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6.5퍼센트)
---------	---------------------------------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8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5(제10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10)를 더한 세율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10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15)을 더한 세율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0”을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103조의34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제106조의2의 제목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을 “(토지 타당성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평가대상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을 “평가대상토지의 선정, 별도합산과세 및”으로, “분리과세 확대·추가”를 “평가대상토지의 확대·추가”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위탁자가”를 “위탁자등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환지(換地)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

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

다. 제7조제17항에 따른 수익자가 신탁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

제11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범위의 상한을

100분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를 “읍·면 지역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감정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1조의2제2항 중 “위탁자”를 “위탁자등”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나목 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조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제3항제4호 등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변경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자가”를 “위탁자등이”로, “위탁자의 다른”을 “위탁자등의 다른”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등을”을 “위탁자등의 재산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자가”를 “위탁자등이”로 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세기준일”을 각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것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
2.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선박 중 다른 선박이나 해양에 대한 소방·방제 등 공공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5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농복합형태”를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 지역은

그 서울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통합특별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다음 각 목의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울로 한다.

가.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100분의 10

나. 통합특별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1)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5

2)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3) 읍·면 지역: 100분의 10

다. 통합특별시의 군 지역: 100분의 10

제152조제1항 전단 중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를 “레저세 및 주민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 개인분·재산세”를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말한다)·재산세”로,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3조제2항 중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13장(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지방주거복지세

제155조(목적) 지방주거복지세는 지역의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운영, 효율적인 공급 및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6조(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주거복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주거복지세는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8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주거복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주거복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주거복지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

· 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주거복지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주거복지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주거복지세의 부과·징수·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주거복지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주거복지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9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7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60조(환급) 지방주거복지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담배소비세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6년이 되는 날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03조의31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2. 부칙 제16조제1항: 2027년 7월 1일

제2조(유연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1호 단서 및 제107조제2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같은 항 제4호 단서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신고·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3조의3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3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을 2026년 5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103조의5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103조의7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03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5(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천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세 세율가감에 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세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방주거복지세 신설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제150조부터 제1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

도한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343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을 “제68조 및 제158조제2항”으로,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을 “제71조 및 제158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2 중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을 “제68조 및 제158조제2항”으로,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을 “제71조 및 제158조제2항”으로 한다.

②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4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854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법」 제157조에 따른 지방주거복지세의 세율 제255조제1항 중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⑦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1조제1항 중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로 한다.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4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854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 ----- ----- ----- --. <후단 삭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	<삭 제>

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 ~ ⑮ (생략)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⑨ ~ ⑮ (현행과 같음)

⑯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가. 해당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각각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보류지 등 가목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장에서 “체비지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체비지등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4.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설립에 따른 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⑰ 다음 각 호의 신탁에 따라 부동산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이하 이 장에서 “수익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상속인인 경우에

<신 설>

제9조(비과세) ①·② (생략)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④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는 제7항에 따른다.

1.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2.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신탁에 준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제9조(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신탁등기 또는 신탁 등록이 -----

제7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니한다.

1. (생략)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

-----.

1. (현행과 같음)

2. -----

----- 주소
를 둔 피상속인이나 -----

--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6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생략)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생략)

5. ~ 7. (생략)

②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4.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항공안전법」 제7조제1항 단서-----

나.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삭 제
2. (생 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
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illegible]

- ## 2. (현행과 같음)

3. _____
- _____
- _____
- _____

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

-----.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

-----.

4. -----
-
-
-
- .
-
-
-
-
-
-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

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⑥ ~ ⑧ (생략)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단서 신설>

2. ~ 4. (생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_____.

5.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illegible]

1. -----

다만,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신탁된 주택은 수익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서울의 특례) ① -----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2. (생략)

3.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생략)

②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3. -----

-----.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법인에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
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
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
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
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
(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
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
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
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
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
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
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illegible]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①·② (생략)

<신 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제26조(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록이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의 등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서울) ① ~ ③ (생략)

<신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34조(서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그 밖의 시

2. 통합특별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시

나.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미만인 경우: 그 밖의 시

다. 읍·면 지역: 군

3. 통합특별시의 군 지역: 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
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
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생 략)

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
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한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

⑤ -----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66조(납세의무자) -----

----- 특별시·통합
특별시-----

-----.

제71조(납입) ① 제68조에 따른

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_____.

2.

특별

시 · 통합 특별시

3. _____

 _____.

가. (현행과 같음)

[illegible]

·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
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략)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분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

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

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52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55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
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천분의 2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45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4.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29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5.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5.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5,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6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6.2퍼센트)
10억원 초과	5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6.5퍼센트)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
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
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
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8호에 따른 세
율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
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
천분의 5(제10항제3호 및 제4
호의 경우 1천분의 10)를 더한
세율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
천분의 10(제10항제3호 및 제
4호의 경우 1천분의 15)을 더
한 세율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

1. (현행과 같음)

2. -----

----- 1천분의 20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여부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1.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제106조의2(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4. (생략)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

② -----
----- 평가대상토지-----

-----.

③ ----- 평가대상토지의 선정, 별도합산과세 및 -----
----- 평가대상토지의 확대·추가 -----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 ---

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
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
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
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
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
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 위
탁자등이 -----
-----.

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
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
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
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
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 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8. (생략)

③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

다. 제7조제17항에 따른 수익자가 신탁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

6. -----
----- 환지 방식 -----

7.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과세표준) ① -----

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단서 신설>

2. (생략)

②·③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건축물

가.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

--.

1. -----

-----. 다만,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범위의 상한을 100분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세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읍·면 지역 외의 -----

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 준의 1천분의 5 다. (생 략) 3. ~ 5. (생 략)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u>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 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 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 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u><신 설></u> <u><신 설></u>	----- ----- ----- ----- ----- 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는</u> ----- ----- ----- ----- ----- -----. 1. <u>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u>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u>제2항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감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생 략)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5.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

가. -----
---- 8천만원 -----

나. -----

----- 7천만원 -----

----- 8천만원 -----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조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제3항제4호 등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변경한 경우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	를 포함한다)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제7항----- ----- ----- -----.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 위탁자등이 ----- ----- ----- ----- ----- 위탁자등의 다른 ----- ----- ----- ----- ----- -----
---	---

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 위탁자등의 재산세등을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탁자등이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0조(신고의무)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0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u>그 토지의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세기준일</u>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u>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u>과세기준일</u>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u> ----- ----- ----- -----.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 ----- -----

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5조(비과세) ① (생략)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
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
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
-----.

③ -----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
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

④ (현행과 같음)

제145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것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1.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
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

2.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
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선박 중 다른 선박이나 해양
에 대한 소방 · 방제 등 공공
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
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것</u>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 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0조(납세의무자)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u>	<u><삭 제></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 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 세액의 1만분의 4,399</u>	<u><삭 제></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u>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 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 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u>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u> ----- ----- ----- ----- ----- --.
<u><신 설></u>	④ <u>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특 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는

④ (생 략)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u>레저세</u>, 담배	<u>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1. <u>특별시·광역시</u>는 <u>인구 50만 이상</u> 시로 보되, <u>광역시의 군 지역은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u> 2. <u>통합특별시</u>는 <u>인구 50만 이상</u> 시로 보되, <u>다음 각 목의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u> 가. <u>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100분의 10</u> 나. <u>통합특별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u> 1) <u>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5</u> 2) <u>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u> 3) <u>읍·면 지역: 100분의 10</u> 다. <u>통합특별시의 군 지역: 100분의 10</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 ----- ----- <u>레저세 및 주민</u>
--	---

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

세 -----

-----, <후단 삭제>

② -----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말한다)
· 재산세 -----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삭 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납입에 대하여 불
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
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
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생 략)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
세) ① (생 략)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
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
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
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
법으로 징수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
세)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통
징수의 방법-----

-----.

제13장 지방주거복지세

<신 설>

제155조(목적) 지방주거복지세는 지역의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운영, 효율적인 공급 및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신 설>

제156조(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주거복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 설>

제1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주거복지세는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 설>

제158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주거복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주거복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
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로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
주거복지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
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
· 징수·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주거복지세를 함께 부
과·징수·납입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
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주
거복지세를 함께 부과·징수·
납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주거복지
세의 부과·징수·납입에 대하
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
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
다.

⑤ 지방주거복지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

<신 설>

<신 설>

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주거복지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9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7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60조(환급) 지방주거복지세의

	<u>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담배소비세 세액의 환 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u>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법률 제18544호 지방 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법률 제18544호 지방 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 지</u> 효력을 가진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 ----- ----- <u>2029년 12월 31일까 지</u> -----.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0호 지방 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0호 지방 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 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 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부터 <u>6년이 되는 날까지</u>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 ----- ----- ---- <u>2029년 12월 31일까지</u> -- -----.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 ----- ----- <u>2029년 12월 31일까지</u>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7조제17항 등) 납세의무자 등	유연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
2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사업소분 주민세 징수 방법을 원칙적 부과·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법으로 개선
3	제103조의3제1항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 개인 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
4	제103조의3제10항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분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분 지방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
5	제103조의3제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 지방소득세 추가 세율 상향)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상향
6	제111조의2 관련 부칙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p를 인하하는 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7조제17항 등) 납세의무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제103조의3제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 방소득세 중과 세율 상향)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제103조의3제10항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지역 양도분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제103조의3제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 지방소득세 추가 세율 상향)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제111조의2 관련 부칙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금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연대용신탁 등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로 전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애 따른 예산 수입 증감 추계 곤란

Ⅲ.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남건욱	채가람	서은주	이현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건욱	044-205-3833	ledmoon8@korea.kr